

의안번호	2218590
의 퇴 인	신장식 의원
회 답 일	2026.6.26.
추계번호	26C2315
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 (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)	○ (제1항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○ (제2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 ○ (제3항)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,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2	안 제10조의2 (국가와 지역단위 간의 협력)	○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 (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조의2 (국가와 지역단위 간의 협력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(안 제6조의2)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(안 제10조의2) 규정하는 내용임
 - 안 제6조의2는 재량규정이며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,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총 1조 6,684억원이며, 단지별 투자액은 대구경북에 9,029억원, 오송에 7,655억원임

(단위 : 억원)

구 분	합 계	투입 자원		단지별 투자액	
		국 비	지방비	대구경북	오 송
운영·인건비	6,026	4,862	1,164	3,168	2,858
인프라	7,856	6,788	1,068	4,582	3,274
R&D	2,802	복지부	885	1,279	1,523
		과기부	1,183		
		산업부	334		
계	16,684	14,052	2,632	9,029	7,655

- 현재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지 않았고,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활성화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안 제10조의2에 따르는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